

곶자왈 IPARK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2.13.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18.12.11. 공고되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 참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2.1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2017.12.13.이전 계속 거주)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되며, 85㎡초과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해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공동주택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분양가중 가점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자격 제한(통장 재사용 등)이 12개월에서 지역별 차등 제한(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 1년, 일반지역 : 6월, 위축지역 : 3월)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소유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주차장 층고는 2.7m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일 등 세부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18년 12월 19일(수)	2018년 12월 20일(목)	2018년 12월 27일(목)	2019년 01월 09일(수) ~ 2019년 01월 11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2018.12.11. 공고되어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주택과 - 8627호(2018.12.13)**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저지리 2875번지 일원
- 입주시기 : 2020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8개동 총 85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총공급
----	--------	-----	------	--------	--------	------	-----	-----

		(주거전용 면적 기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지하주차장포함)		대지지분	세대수
민영주택	2018001251-01	84.9100A	84A	84.9100	23.9329	108.8429	84.7565	193.5994	129.8	25
	2018001251-02	84.9737B	84B	84.9737	24.3622	109.3359	84.8201	194.1560	129.9	6
	2018001251-03	84.4653C	84C	84.4653	24.0428	108.5081	84.3126	192.8207	129.1	32
	2018001251-04	84.4735D	84D	84.4735	24.2315	108.7050	84.3208	193.0258	129.1	8
	2018001251-05	96.2924	96	96.2924	27.4906	123.7830	96.1183	219.9013	147.2	7
	2018001251-06	108.7760	108	108.7760	31.0639	139.8399	108.5794	248.4193	166.3	7
합계										85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 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VAT포함)

주택형	타입	동	호	충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9.02.11.	2019.05.10.	2019.08.12.	2019.11.11.	2020.01.10.		2020.03.10.	입주시
84.9737B	84B	101동	201호	284,200,000	439,000,000	723,20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72,320,000	216,960,000	
84.9737B	84B		202호	281,700,000	434,000,000	715,70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71,570,000	214,710,000
84.9737B	84B		301호	292,900,000	451,000,000	743,900,000	74,390,000	74,390,000	74,390,000	74,390,000	74,390,000	74,390,000	74,390,000	74,390,000	74,390,000	223,170,000
84.9737B	84B		302호	289,200,000	447,000,000	736,20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220,860,000
84.9737B	84B		401호	317,700,000	490,000,000	807,700,000	80,770,000	80,770,000	80,770,000	80,770,000	80,770,000	80,770,000	80,770,000	80,770,000	80,770,000	242,310,000
84.9737B	84B		402호	315,000,000	486,000,000	801,0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240,300,000
84.4653C	84C	102동	101호	282,600,000	435,000,000	717,600,000	71,760,000	71,760,000	71,760,000	71,760,000	71,760,000	71,760,000	71,760,000	71,760,000	71,760,000	215,280,000
84.4653C	84C		102호	278,900,000	429,000,000	707,90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212,370,000
84.4653C	84C		201호	288,100,000	445,000,000	733,10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73,310,000	219,930,000
84.4653C	84C		202호	285,700,000	440,000,000	725,70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217,710,000
84.4653C	84C		301호	296,700,000	458,000,000	754,700,000	75,470,000	75,470,000	75,470,000	75,470,000	75,470,000	75,470,000	75,470,000	75,470,000	75,470,000	226,410,000
84.4653C	84C		302호	294,000,000	453,000,000	747,0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224,100,000
84.4653C	84C	103동	401호	322,400,000	497,000,000	819,40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81,940,000	245,820,000
84.4653C	84C		402호	319,100,000	492,000,000	811,10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243,330,000
84.9100A	84A		101호	275,000,000	425,000,000	70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96.2924	96		102호	309,100,000	476,000,000	785,100,000	78,510,000	78,510,000	78,510,000	78,510,000	78,510,000	78,510,000	78,510,000	78,510,000	78,510,000	235,530,000
108.776	108		103호	358,700,000	609,400,000	968,10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96,810,000	290,430,000
84.9100A	84A		201호	279,900,000	432,000,000	711,90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213,570,000
84.9100A	84A	302호	202호	285,400,000	441,000,000	726,400,000	72,640,000	72,640,000	72,640,000	72,640,000	72,640,000	72,640,000	72,640,000	72,640,000	217,920,000	
84.9100A	84A		301호	287,900,000	445,000,000	732,90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219,870,000	
84.9100A	84A		302호	293,800,000	454,000,000	747,800,000	74,780,000	74,780,000	74,780,000	74,780,000	74,780,000	74,780,000	74,780,000	74,780,000	224,340,000	

84.9100A	84A		401호	315,500,000	486,000,000	801,50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80,150,000	240,450,000
84.9100A	84A		402호	318,900,000	493,000,000	811,900,000	81,190,000	81,190,000	81,190,000	81,190,000	81,190,000	81,190,000	81,190,000	243,570,000
108.776	108		101호	357,100,000	606,100,000	963,20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288,960,000
96.2924	96		102호	307,200,000	474,000,000	781,20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234,360,000
96.2924	96		103호	307,200,000	474,000,000	781,20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234,360,000
108.776	108		104호	357,100,000	606,100,000	963,20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288,960,000
108.776	108		105호	357,100,000	606,100,000	963,20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288,960,000
96.2924	96		106호	307,200,000	474,000,000	781,20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234,360,000
96.2924	96		107호	307,200,000	474,000,000	781,20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78,120,000	234,360,000
108.776	108		108호	357,100,000	606,100,000	963,20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96,320,000	288,960,000
84.9100A	84A		201호	287,000,000	443,000,000	730,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84.9100A	84A	104동	202호	287,000,000	443,000,000	730,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84.9100A	84A		203호	287,000,000	443,000,000	730,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84.9100A	84A		204호	287,000,000	443,000,000	730,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84.9100A	84A		301호	295,500,000	456,000,000	751,50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225,450,000
84.9100A	84A		302호	295,500,000	456,000,000	751,50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225,450,000
84.9100A	84A		303호	295,500,000	456,000,000	751,50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225,450,000
84.9100A	84A		304호	295,500,000	456,000,000	751,50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75,150,000	225,450,000
84.9100A	84A		401호	320,900,000	495,000,000	815,90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244,770,000
84.9100A	84A		402호	320,900,000	495,000,000	815,90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244,770,000
84.9100A	84A		403호	320,900,000	495,000,000	815,90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244,770,000
84.9100A	84A		404호	320,900,000	495,000,000	815,90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81,590,000	244,770,000
108.776	108		101호	353,900,000	599,500,000	953,400,000	95,340,000	95,340,000	95,340,000	95,340,000	95,340,000	95,340,000	95,340,000	286,020,000
96.2924	96		102호	304,300,000	469,000,000	773,300,000	77,330,000	77,330,000	77,330,000	77,330,000	77,330,000	77,330,000	77,330,000	231,990,000
96.2924	96		103호	302,400,000	467,000,000	769,400,000	76,940,000	76,940,000	76,940,000	76,940,000	76,940,000	76,940,000	76,940,000	230,820,000
108.776	108		104호	351,400,000	597,300,000	948,700,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94,870,000	284,610,000
84.9100A	84A	105동	201호	281,500,000	434,000,000	715,500,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71,550,000	214,650,000
84.9100A	84A		202호	279,900,000	432,000,000	711,90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71,190,000	213,570,000
84.9100A	84A		301호	289,500,000	447,000,000	736,500,000	73,650,000	73,650,000	73,650,000	73,650,000	73,650,000	73,650,000	73,650,000	220,950,000
84.9100A	84A		302호	287,900,000	445,000,000	732,90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219,870,000
84.9100A	84A		401호	315,500,000	487,000,000	802,50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80,250,000	240,750,000
84.9100A	84A		402호	315,000,000	487,000,000	802,0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40,600,000
84.4735D	84D		101호	277,900,000	428,000,000	705,900,000	70,590,000	70,590,000	70,590,000	70,590,000	70,590,000	70,590,000	70,590,000	211,770,000
84.4735D	84D		102호	275,000,000	425,000,000	70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84.4653C	84C		103호	275,800,000	425,000,000	700,80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70,080,000	210,240,000
84.4653C	84C		104호	278,900,000	429,000,000	707,90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70,790,000	212,370,000
84.4735D	84D		201호	284,600,000	439,000,000	723,600,000	72,360,000	72,360,000	72,360,000	72,360,000	72,360,000	72,360,000	72,360,000	217,080,000
84.4735D	84D		202호	280,600,000	432,000,000	712,60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213,780,000
84.4653C	84C		203호	282,400,000	436,000,000	718,400,000	71,840,000	71,840,000	71,840,000	71,840,000	71,840,000	71,840,000	71,840,000	215,520,000
84.4653C	84C		204호	285,700,000	440,000,000	725,70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72,570,000	217,710,000
84.4735D	84D	106동	301호	292,900,000	452,000,000	744,900,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223,470,000
84.4735D	84D		302호	288,600,000	445,000,000	733,600,000	73,360,000	73,360,000	73,360,000	73,360,000	73,360,000	73,360,000	73,360,000	220,080,000
84.4653C	84C		303호	290,500,000	449,000,000	739,500,000	73,950,000	73,950,000	73,950,000	73,950,000	73,950,000	73,950,000	73,950,000	221,850,000
84.4653C	84C		304호	294,000,000	453,000,000	747,0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224,100,000
84.4735D	84D		401호	317,700,000	491,000,000	808,700,000	80,870,000	80,870,000	80,870,000	80,870,000	80,870,000	80,870,000	80,870,000	242,610,000
84.4735D	84D		402호	315,000,000	485,000,000	80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80,000,000	240,000,000
84.4653C	84C		403호	315,900,000	487,000,000	802,900,000	80,290,000	80,290,000	80,290,000	80,290,000	80,290,000	80,290,000	80,290,000	240,870,000
84.4653C	84C		404호	319,100,000	492,000,000	811,10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81,110,000	243,330,000

84.4653C	84C	107동	101호	277,400,000	427,000,000	704,40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211,320,000	
84.4653C	84C		102호	279,500,000	432,000,000	711,50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213,450,000
84.4653C	84C		201호	284,100,000	438,000,000	722,10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216,630,000
84.4653C	84C		202호	287,300,000	442,000,000	729,30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218,790,000
84.4653C	84C		301호	292,300,000	451,000,000	743,30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222,990,000
84.4653C	84C		302호	294,800,000	456,000,000	750,80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225,240,000
84.4653C	84C		401호	317,000,000	490,000,000	807,0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242,100,000
84.4653C	84C		402호	320,100,000	495,000,000	815,10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244,530,000
84.4653C	84C	108동	101호	279,500,000	432,000,000	711,50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71,150,000	213,450,000
84.4653C	84C		102호	277,400,000	427,000,000	704,40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70,440,000	211,320,000
84.4653C	84C		201호	287,300,000	442,000,000	729,30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72,930,000	218,790,000
84.4653C	84C		202호	284,100,000	438,000,000	722,10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72,210,000	216,630,000
84.4653C	84C		301호	294,800,000	456,000,000	750,80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225,240,000
84.4653C	84C		302호	292,300,000	451,000,000	743,30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74,330,000	222,990,000
84.4653C	84C		401호	320,100,000	495,000,000	815,10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81,510,000	244,530,000
84.4653C	84C		402호	317,000,000	490,000,000	807,0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242,100,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광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임.
- 발코니 확장위치

주택형	타입	확장위치
84.9100A	84A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안방, 주방/식당, 현관
84.9737B	84B	거실, 침실1, 침실2, 안방, 주방/식당
84.4653C	84C	거실, 침실1, 침실2, 안방, 주방/식당, 드레스룸, 욕실-2, 현관
84.4735D	84D	거실, 침실1, 침실2, 안방, 주방/식당, 드레스룸, 욕실-2
96.2924	96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식당
108.7760	108	거실, 안방, 침실1, 복도, 주방/식당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협력업체 입찰결과, 제품의 품질/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의 저촉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채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기본주택내에 비치된 확장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문의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기본제공품목(시스템에어컨 2대, 오븐, 쿡탑, 주방TV, 등이 사이버기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상옵션은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 됨.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 함.
- 입주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고를 하여야 함.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및 추첨제(60%)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8.12.13)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자 중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자(85㎡ 초과)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 추첨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포함)에 가입한 자 / 추첨제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접수 입력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은행별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및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05.04)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09.0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청약 가점점수 = ①+②+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 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세대”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단,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주택 (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 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 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 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위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 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 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이하이며,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단, 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 이하)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II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방법

▶ 공통

1.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2. 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은행별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
- ※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군,도 단위) 전입일을 기재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18.12.19(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8.12.20(목) 08:00~17:3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주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2017.12.13. 이전부터 계속 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2.11. 공고되어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제출하시기 바람,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p>받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6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018.12.11. 공고되어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 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Ⅲ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8.12.27.(목)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 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19.01.09.(수)~2019.01.11.(금) (10:00~16:00) (공휴일제외 3일간) 장소 - 견본주택 (장소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41-1)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2you.com)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奎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 2018.12.27. (목) ~ 2019.01.05. (토)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2018.12.27.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대상 제공일시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19.01.09.(수)~2019.01.11.(금) (공휴일제외 3일간)	건본주택	1544-2001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중소기업은행	660-005250-01-057	아시아신탁(주)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된 것으로 함(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종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공동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서류		구비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공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본인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공동주택 계약용) 1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인감증명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인터넷 청약자는 생략)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거주기간 및 세대주기간 확인이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며, 초본은 3년간 거주확인 사항임(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에 한함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본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본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본인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입증서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		인감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아래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집단대출제한등), 금융시장변화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불가시 분양대금을 자기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정된 계좌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로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주택구입자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 위탁자는 용자기관과 협약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시행위탁자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계약자별 대출기관 변경 불가)
- 용자알선과 관련하여 시행위탁자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 시 시행위탁자는 용자를 알선 하지 않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잔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IV 시스템 에어컨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 시스템 에어컨 옵션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개 소	설 치 장 소	일반형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시	2019.11.11	입주시
84.9100A	4 개소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6,600,000	660,000	1,980,000	3,960,000
84.9737B	3 개소	주방 + 침실1 + 침실2	5,000,000	500,000	1,500,000	3,000,000
84.4653C	3 개소	주방 + 침실1 + 침실2	5,000,000	500,000	1,500,000	3,000,000
84.4735D	3 개소	주방 + 침실1 + 침실2	5,000,000	500,000	1,500,000	3,000,000
96.2924	2 개소	주방 + 침실2	3,400,000	340,000	1,020,000	2,040,000
108.7760	3 개소	주방 + 침실 1 + 침실2	5,000,000	500,000	1,500,000	3,000,000

- ▣ 빌트인 김치 냉장고 옵션
- 빌트인 김치 냉장고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모 델 명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시	2019.11.11	입주시
빌트인 김치 냉장고	LG R-D222NX/WX.AKOR	1,470,000	147,000	441,000	882,000

■ 옵션(시스템 에어컨, 가구) 설치공사비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중소기업은행	옵션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660-005250-01-040	아시아신탁(주)

■ 시스템 에어컨 및 빌트인 김치 냉장고 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①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②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③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해당동 옥상에 설치되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바람등의 영향이 세대에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④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⑤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⑥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⑦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⑧ 위 옵션의 제품의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이유로 본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동의나 통보는 하지 않음
- ⑨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V **유의사항**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자명단관리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또한,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 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을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가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유무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판단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등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자의 계약 시 공동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소명기간(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예비입주자는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 및 계약체결일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또는 인근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분양권 전매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7월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안내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서상 연락처 등 오류, 착오기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위장전입자가 본 공동주택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주택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를 준용함

▣ 공통 유의사항

-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계약시 자동으로 무상설치 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각 단지별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공용면적 및 대지면적의 차에 따라 같은 주택형이라 해도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유면적비에 따라 대지면적을 배분하였으며, 준공 시 확정측량에 의해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또는 잔금납부일 중 선도래일)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건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 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보강토블럭,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지분면적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은 주택형별로 면적산정 후 각각의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되었고,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등)은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음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은 공동으로 사용하여함.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와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한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순위 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재당첨금지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 야 함)

- 본 공동주택 단지 주변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변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스 등 사업부지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허가 협의 시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시설(도로, 공원, 공공용지, 완충녹지,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허가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지연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변경 및 추가설치,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조경용 조명 및 보안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에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시행주체, 시공사, 시행위탁사와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함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록 등) 및 분양 홈페이지 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홍보물 또는 카다록, 공급간지, 기타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홍보물의 자료는 확장형으로 표현되었으며 설치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입찰결과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됨
- 견본주택에 비치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시공사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에 비치된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홍보물의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의 홍보물 등을 카다록 및 모형의 충분한 숙지 및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바람
- 본인 동호수지정 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의 모형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후 관계규정에 의거 임의로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보존함
- 분양 홍보물 상의 단지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함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에어컨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현관방화문은 본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표시된 각종 배관의 위치는 본공사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람
- 각 주택형 홍보물에 표현된 주방액정TV, 조리기구 행거, 컵받침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건본주택, 팜플렛 등을 참조바람
- 세대내 배선기구,조명기구,월패드,통신단자함.세대분전반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 전원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104동,105동 최상층 지붕에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되므로 계약시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쿨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상가 세대내 급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됨.
- 공동화장실에 동파방지용 전기방열기가 설치되고, 전용공간 내 난방 및 급탕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각 실별로 실내에 완강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간섭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내 냉각탑, 냉난방설비, 비상발전기, 승강기설비, 하향식 피난구, 가스저장탱크, 시각경보기 등 시설에 대하여 작동 소음 및 미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일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DA급배기구. TOP LIGHT. 조정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 조망, 빛 반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환기 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저층 일부 호실의 소음, 진동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LPG 저장소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LPG 저장소 배관 인입위치, 관경 등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 LPG 저장소 공급을 위한 가스압력조정설비(지역정압기 포함)를 부지 내에 설치하며, LPG 저장소 인입위치 및 정압시설 위치 및 규격 등은 LPG 공급업체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준공 후 LPG 공급에 대한 계약의 승계여부는 분양자에게 있음.
- 배관 및 덕트 등의 설비 유체흐름에 따른 진동,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호실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설계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외벽에 장식, 조명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도로의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자 램프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제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기타시설 관련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옥상의 경우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 하고 접근하여서도 안되며 이를 어기고 접근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소음, 바람, 진동등에 의한 세대 간섭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세대 에어컨은 옥상에 설치 됨)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용도의 덕트가 지상부로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대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은 최상층세대는 관계법령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나, 기준층세대 대비 단열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상부 타세대 에어컨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의 공급가는 이를 감안한 금액으로 향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가구,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공동주택내 조명형 사인으로 인해 세대내 일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우수수 배수시설, 저수조, 기계실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게시할 예정임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보안등 등)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및 차도와 지상주차장에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의 배치 상 일부동의 저층세대 및 특정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으니, 분양홍보관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휴게시설, 부대복리시설, 통행로등에 인접한 해당 동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다로그 단지배치도, 모형 등 참조)
- 공동주택의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 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및 내부 형태,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및 차량의 동선방향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 및 배치도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옥탑 및 지붕에는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벽 및 세대 간 벽의 접합부위 등에 따라 단열설치 및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유효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거실 및 침실의 천장고 기준은 2.4M이며,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 될 수 있음
-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 됨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 하드웨어 등은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공사 시 좌우세대,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 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및 건물외벽 등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선홍통 배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본 건축물 내 수전의 위치 및 욕실위생도기, 주방싱크대, 전자레인지, 보일러, 실외기 등 기타고정물에 대한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축물 내 바닥마감 패턴 및 타일나누기, 시공나누기 등은 실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 등)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화장실,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 물쓰는 공간에 대한 문턱 및 이와 유사한 마감 단차에 대해서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이며, 실내화등 기타 이용행위에 대한 높이와는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음
- 각동 최하층 오배수배관 재질은 PVC 계열임
- 동파의 우려가 있는 배관은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을 적용함
- 세대내 통합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전력공급에 관련하여 부지내 지상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공급업체(한국전력)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지상기기 장소의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음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의 공용부면적 배분은 단지 내 전체 공용부 면적을 합산하여 각 세대별, 호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비율 배분 시 생기는 소수점 이하 오차부분에 대하여는 임의적용 또는 배분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단지의 주차계획은 해당법규에 따른 주차대수산정 및 주차단위 구획을 종별로 배분한 것으로 세대수 및 형별타입을 기준으로 주차대수 산정을 하지 않음
- 단지의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조경 등 의해 인접한 동의 세대는 조망권에 간섭이 발생하니 배치도 및 모형을 참조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별도의 단지 문주는 설치되지 않음
- 4층 다락이 설치된 세대의 전면에 별도의 수전은 설치 되지 않으며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내 103동 근처 가스저장고가 설치 되며 이에 따른 조망이나 세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충전에 따른 차량 진입등에 따른 세대 간섭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내 가스저장고는 본공사시 위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주방 쿡탑은 전기쿡탑이며 별도의 가스배관 설치는 되지 않음.
- 주방후드 배기는 덕트방식이 아닌 세대별 직배기 방식임.
- 근린생활시설주차는 지상에 2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주차장이용은 불가함.
- 101동의 경우 세대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함.
- 건축법 제48조의 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VI등급 확보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8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적용]

구분	의무사항	의무사항	적용 여부 의무사항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적용
	고효율가정용보일러	적용
	고효율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	적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단위:원 / 부가세 포함)	주소
건축, 기계, 토목	주식회사 경진건축사사무소	741,026,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7, 3층(방배동, 이창빌딩)
소방, 전기, 통신	(주)지케이엔지니어링	135,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9층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구분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45,844,890,000	제 01282018-101-00164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① 본 사업은 (주)조인디앤씨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본 공급 계약 상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공급 계약 해제/해지시 공급대금 반환 의무 이행,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하자담보책임, 입주지원 지체상금 지급 등)는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이 신탁 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조인디앤씨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② 분양수입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③ 수분양자는 아시아신탁(주)을 상대로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모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에게 있다.
- ④ 신탁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조인디앤씨 및 수탁자 아시아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종료(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업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인 (주)조인디앤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⑤ 분양수입금으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의 효력이 없다.

■ 시행수탁자 : 아시아신탁(주) (사업자등록번호 : 120-87-07104)

■ 시 공 자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사업자등록번호 : 120-86-00273)

■ 시행위탁자 : (주)조인디앤씨 (사업자등록번호 : 718-81-00532)

■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 제주특별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841-1 ☎ 1544-2001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